



# 업무협약서



재단법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(이하 ‘양 기관’)는 상호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본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위기 보호관찰 대상자의 문제를 인권에 기반해 공동으로 대처하고,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며, 수강 교육을 통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본 운영 원칙)** 양 기관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력한다.

**제3조(협약내용)**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협력한다.

- 지역사회 위기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재범 방지 예방·교육 프로그램 및 캠페인, 홍보사업 등 공동사업추진에 대한 상호 협력
- 사업 진행 등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과 공유 협력
-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학술조사 및 정책 연구에 대한 상호 협력
- 기타 본 협약을 위해 양 기관이 상호 필요하다고 협의된 사항

**제4조(비밀유지)** 양 기관은 본 협약에 의해 제공되거나 취득하게 되는 자료 및 정보의 비밀유지나 유출방지를 위하여 상호 동의 없이 본 협약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
**제5조(협의조정)** 양 기관은 신의 성실과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며,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협약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**제6조(효력 및 유효기간)**

- 본 협약은 협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-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에서부터 1년으로 한다.
- 협약의 유효기한은 만료 1개월 전까지 상호서명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.

**제7조(해지)** 본 협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당사자 상호간에 발생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본 협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.

상호 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,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3. 7. 14.

제주여성가족연구원  
원장 문순덕

문순덕

제주보호관찰소  
소장 김대요

김대요